

1. 보험계약사항

보험종목		증권번호	
보험계약자		보험가입금액	

2. 다른 보험회사 계약사항 (있음 없음)

보험회사		보험가입금액	
------	--	--------	--

(금번 사고와 관련한 모든 보험계약을 명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실 경우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실 수 있습니다.)

3. 사고개요

사고일시		사고원인	
사고장소		피해품	
사고경위 (6하 원칙으로 상세기재)			

청구자 본인은 상기 내용에 사실과 다른 것이 있거나 관련서류 또는 증거가 위조, 변조된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할 수 있으며 동시에 그에 따른 모든 법적 책임을 부담할 것이며, 만일 보험약관 또는 제규정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일체를 반환할 것을 약속합니다.

20 년 월 일

보험금 청구인 성명: (인) / e-mail: (피보험자와의 관계:)
주소: (연락처:)

☞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발생하지도 않은 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는 행위,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의 원인, 내용등을 조작하거나 피해정도를 과장하는 행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상 금지된 범죄입니다.”
☞ “보험사기자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와 별도로 보험가입제한, 대출 및 신용카드 발급 등 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보험금 수령 위임

위 사고에 따른 보험금의 수령권한,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나 이용 및 제공 동의에 관한 일체의 권리, 기타 위 사고와 관련된 보험계약상의 권리 일체를 위임 받는 분에게 위임하며, 향후 이와 관련 일체의 이의가 없음을 서약하고 그 증거로서 본 위임내용에 날인(인감도장)하여 제출합니다.

위임 하는 분	(인)	주민번호: - (Tel:)
위임 받는 분	(인)	주민번호: - (Tel:)

5. 질권기관 담당자

질권기관명		부/지점		과 / 계	
직 위		성 명		연락처	

※ 보상진행 및 처리결과는 휴대폰문자(SMS)로 안내되며, 기타방법(E-mail, FAX, 우편)으로 안내를 원하시는 경우 아래 항목 중 하나에 (V)표시 바랍니다.
안내방법: E-mail FAX 우편 불필요

..... 절 취 선

온라인 송금 요청서

DB손해보험주식회사 귀중

계좌번호		은행명	
예금주(상호)		주민(사업자)번호	
<p>◆ 위 통보내용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계좌로의 송금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인이 일체의 책임을 지겠으며 귀사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음.</p> <p style="text-align: center;">요청일 20 년 월 일 요청인 성명(상호) (인)</p>			

※ 송금 받으실 보험금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인감날인 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시 알아두셔야 할 사항

1. 보험금 청구 관련 안내

- * 보험금을 받으실 통장은 피보험자 본인 명의의 통장이어야 합니다. 단,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엔 위임장 없이 친권자(부모) 계좌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가족관계확인서 제출)
- * 손해사정을 위한 방문조사가 필요할 수 있으며, 담당자가 별도 연락을 드립니다.
- * 안내된 서류 이외에도 추가 서류를 요청 드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 * 사고발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상법 제662조)

3. 보험금 지급지연

- *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가 지급 보험금 청구절차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서면 혹은 유선 등으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4. 가 지급 보험금 제도

- * 보상하는 사고의 손해사정이 늦어지는 경우 청구권자의 요청에 의해 추정지급보험금의 50%내에서 보험금을 (가)지급하여 드릴 수 있습니다.

5. 보험계약자 등의 손해사정사 선임 및 손해사정 비용 부담

- 보험계약자 등의 손해사정사 선임
 '보험계약자 등' 이라 함은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 보험수익자 · 피해자 · 그 밖에 보험사고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를 말하며, 보험계약자 등은 아래의 경우에 손해사정사를 따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①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을 착수하기 이전에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에 손해사정사의 선임의사를 통보한 경우
 ②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통보(제3보험상품의 경우 접수가 완료된 날을 말한다)를 받은 날부터 7일이 경과하여도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③ 보험회사가 고용 또는 선임한 손해사정사의 사정 결과에 승복하지 않거나 별도의 손해사정이 필요한 경우
- 손해사정 비용의 부담
 ① 상기 (1)의 ①, ②의 경우에 의하여 선임한 손해사정사의 보수는 보험회사가 부담합니다.
 ② 상기 (1)의 ③의 경우에 의하여 선임한 손해사정사의 보수는 보험계약자 등이 부담합니다.
- 아래의 경우와 같이 보험계약자 등이 따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에 소속된 손해사정사 또는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이 체결된 손해사정업자가 손해사정을 하게 됩니다.
 ① 보험계약자 등이 본 건 보험금 청구서를 포함한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또는 그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을 따른 손해사정사 선임 관련 안내일로부터 3영업일 내에 선임 관련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② 손해사정 지연시 사고현장 훼손 · 손해 확대 등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상기 ①에 따른 선임 관련 안내시 보험회사에 소속된 손해사정사 또는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이 체결된 손해사정업자가 업무를 진행한다는 사실에 대해 보험계약자 등의 동의를 얻은 경우
-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려고 보험회사에 알리는 경우 보험회사는 그 손해사정사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손해사정사 선임에 관한 동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손해사정사 선임에 관한 동의기준"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보험계약자 등이 선임하고자 하는 손해사정사가 보험업법 제187조, 제186조의2, 보험업법감독규정 제9-21조의2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 및 교육을 이수하고 손해배상보증예탁금을 예탁하거나 인허가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② 보험회사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계약자 등의 손해사정사 선임요청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 손해사정사가 선임 요청일 기준 최근 5년 내 손해사정 업무 관련 보험 관련 법규(보험업법·시행령·시행규칙·감독규정 등)를 위반한 사실과 관련하여 감독당국으로부터 제재를 통지받거나 보험회사로부터 2회 이상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경고(시정요구 등)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나. 손해사정사가 선임 요청일 기준 최근 5년 내 손해사정 업무 관련 보험사기방지특별법, 형법, 변호사법, 개인정보·신용정보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과 관련하여 사법기관 또는 감독당국으로부터 처벌 또는 제재를 통지받거나 보험회사로부터 2회 이상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경고(시정요구 등)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다. 손해사정사가 선임 요청일 기준 최근 5년 내 감독규정 제9-16조 제5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보수를 부담한 계약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등에게 추가적인 보수를 요구하거나 이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라. 해당 손해사정사에 대하여 보험사기 인지 보고가 되어 조사가 개시되었거나 수사기관에서 수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마.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보험금에 대한 화해·중재·합의 등 업무를 수행하기로 약속한 사실 또는 수행 중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바. 보험회사가 선임 동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손해사정사에게 평가를 위한 자료제공을 요청하였으나 손해사정사가 선임 동의 기한까지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사.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 업무위탁 및 손해사정사 선임등에 관한 모범규준 제7제4항에 따른 보수에 대해 동의하지 않은 경우
 아. 자동차사고의 경우 발생된 손해를 정비업체, 의료기관 등을 통해 지급보증하거나, 관련 법규에 따라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 보험계약자 등이 선임한 손해사정사의 업무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②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③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④ 상기 ①~③의 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작성 · 제출의 대행
 ⑤ 상기 ①~③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의 진술

6. 비례보상 및 중복보험 안내

- * 보험종목 및 특약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작은 경우 비례보상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둘 이상의 보험계약이 있는 경우 중복보험 처리규정에 따라 보상됩니다.

7. 손해사정서 열람 또는 사본 교부

- *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탁 받은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한 후 손해사정서를 작성한 경우에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험회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금청구권자에게 손해사정서를 내어 주고, 그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보험업법 제189조) 단, 보험사고로 인해 손해가 경미하고 보험사고 발생 후 즉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손해사정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보험업감독규정 제9-20조 제4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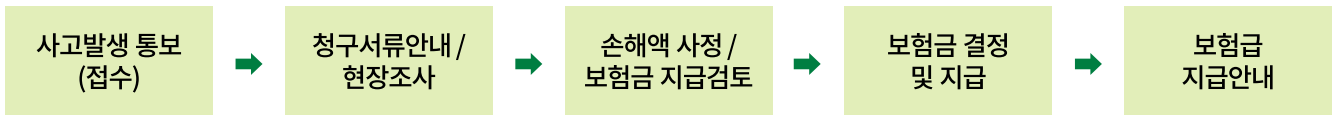
8. 보험금 지급안내 및 심사절차 조회 방법

*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접수시 통보하여 주신 연락처(e-mail 또는 SMS)로 보험금 지급안내문이 발송됩니다.
DB손해보험 홈페이지(www.idbins.com)에 접속하시면 계약내용 및 사고처리 진행과정 및 지급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9. 재심사 청구

* DB손해보험의 보험금 지급 결정 및 보험금 결정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DB손해보험 소비자보호파트로 통보하시면 재심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접수 : 홈페이지(www.idbins.com, 고객센터)에 접속하여 신청
우 편 접 수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32 DB금융센터 19층 소비자보호파트
전 화 상 담 : 1588-0100

보험금 지급절차 06194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32 DB금융센터 대표번호 : 1588-0100 / www.idbins.com



※ 사고접수가 완료되면 SMS를 통해 사고접수 및 보상담당자 성명과 연락처가 통보됩니다.

※ 보험금 지급, 보상처리 종결시 SMS 및 제공하신 전자우편 주소를 통해 보험금 지급내역이 통보됩니다.